

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지침

시행 : 2019.05.14

제1조(진급시험의 목적)

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) 내규 제39조에 의거 본 대학원 재학생의 기본법학과목에 대한 자기점검과 실력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급시험위원회)

- ① 시험결과에 대한 사정 및 시험과목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진급시험위원회를 둔다.
- ② 진급시험위원회는 종합시험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진급시험위원회에 대한 그 외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위원회 지침을 준용한다.

제3조(대상)

본 대학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시험과목)

- ① 시험과목 및 배점은 [별표1]과 같다.
- ② 시험유형은 선택형으로 한다.
- ③ 시험범위는 변호사시험 범위 및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.

제5조(시험시기)

진급시험은 하계방학 중 1회, 동계방학 중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시험일에 대한 공고)

시험일은 시험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공고한다.

제7조(합격)

- ① 합격기준은 원칙적으로 [별표2]와 같이 1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% 이상, 2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% 이상으로 하되,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40% 대 60%로 한다.
- ③ 그 외 필요한 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사정지침」에 의한다.

제8조(이의신청)

진급시험 합격자 사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처리 등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위원회 규정」 제6조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제5조(시험시기) 및 제6조(합격) 제2항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는 동계방학 진급시험만을 실시하여 진급자를 결정하며, 2017학년도부터 하계 및 동계 진급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제7조(합격)의 제1항 및 제2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